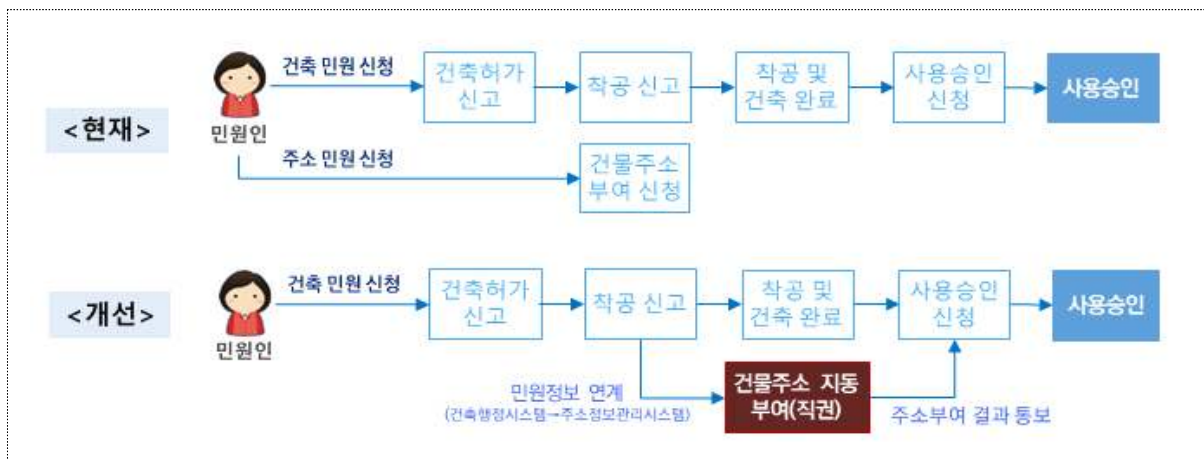


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,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

-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
-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,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

< 건물 신축 시, 주소 부여 절차 개선 >



-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,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.
 -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,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에 ‘착공신고’를 한 후,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‘건물주소 부여’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.
 -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,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.
- ※ 세움터(건축 관련) 및 정부24(주소 관련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

- 특히, 건물 사용승인(준공)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,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(준공)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.

※ 현장방문 등 '건물주소 부여' 행정처리에 최대 14일 소요(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)

-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,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.

-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,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.

- 또한,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·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.

-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 시스템(행안부) 및 건축행정시스템(국토부)을 개선하여 민원정보(서류)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.

-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“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,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“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.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, 구비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 <공동배포>	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	책임자	과 장	이진철	(044-201-3755)
		담당자	사무관	조관우	(044-201-3758)
		책임자	과 장	박광섭	(044-205-3551)
		담당자	사무관	국정완	(044-205-3561)